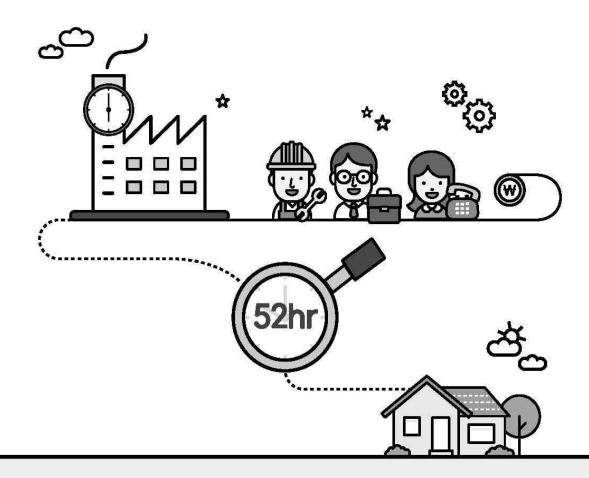
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가이드

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 2020. 1





- □ 본 안내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'고용장려금'으로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
(지원금 모의계산 엑셀서식도 다운로드 가능)

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는 유투브에서 홍보용 동영상(5분)을 먼저 시청하시면 더욱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관련 영상 제목

「노동시간 단축 VS 일자리함께하기 is 뭔들」

목

I . 개요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지원 요건 및 지원 체계3
Ⅲ. 지원 내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Ⅳ. 지원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지원금 산정방법 8
V. 지원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VI. 제출 서류 및 참고사항 ······· 19
Ⅷ.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Q&A ········ 20
■ [붙임1] 근로시간 단축 관련「근로기준법」주요내용 35
■ [붙임2]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유형(공모방식) 37
■ [붙임3] 주 근로시간 단축형 지원(예시)
■ [붙임4]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변경 예시 39
■ [붙임5]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서식 40
◈ 전국 고용센터(기업지원 부서) 연락처 47

추진배경 (주 최대 52시간제 시행)

- 장시간 노동 관행^{*}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**'1주는 7일'로** 명시함에 따라,
 - * 한국(2,069시간), 멕시코(2,255시간), 일본(1,713시간), OECD 평균(1,763시간)
 -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(법정근로 40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)이며,
 - 주 최대 52시간제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
 - *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
- ◈ 근로시간 단축 관련「근로기준법」주요 내용
- ① 연장·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(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)
 - ▲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: '18.7.1.
 - * 특례제외업종(21개): 주 최대 68시간 이하('18.7.1.), 주 최대 52시간 이하('19.7.1.)
 - ▲ 상시근로자수 50~300인 미만: '20.1.1.
 - ▲ 상시근로자수 5~50인 미만: '21.7.1.
- ② 특례업종 축소('18.7.1., 26개 → 5개)
 - * 특례존치업종(5개): ①육상운송업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) ②수상운송업, ③항공운송업,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, ⑤보건업
 - *특례제외업종(21개): ①보관 및 창고업,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,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, ④소매업, ⑤금융업, ⑥보험 및 연금업,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, ⑧우편업, ⑨전기 통신업, ⑩교육서비스업, ⑪연구개발업,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, ⑬광고업, ⑭숙박업, ⑤음식점 및 주점업, ⑥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, ⑩방송업, ⑱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, ⑩하수·폐수 및 분뇨처리업, ⑩사회복지서비스업, ⑪미용·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+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
- ※ [붙임 1] 근로시간 단축 관련 주요 내용 참조
- 「근로기준법」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만 하는 기업의 제도 정착을 지원해야 할 필요
 - 연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신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

일자리함께하기

- 그간 근로시간 단축, 교대근로 개편 등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'일자리함께하기' 사업을 '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,
-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신규 적용 기업을 위해 기존 '일자리함께하기' 사업에 '주 근로시간 단축제' 지원 유형 신설('18.7.1.)
- ◈ 일자리함께하기
- 1. 교대제 도입 확대: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(4조 이하에 한함)
- 2. 근로시간 단축제
- ① 실 근로시간 단축제: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- ② 주 근로시간 단축제: 「근로기준법」 개정(법률 제15513호)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 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
- 3. 일자리 순환제 :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에 따라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
- 동 가이드는 **'주 근로시간 단축제'** 에 대한 지원 내용 중심으로 설명
 - * 적용대상: 개정 「근로기준법」이 국회 통과된 시기('18.2.28.)을 고려. '18.3.1. 이후 근로 시간을 새로 단축한 기업에 한해 적용되며.
 - *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제외업종(21개)의 노동시간 단축 적용 시기와 동일 적용

참 근로시간 단축 유형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활용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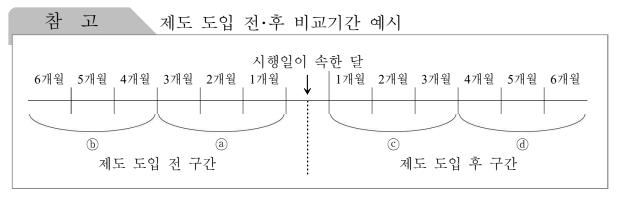
- ① 상시근로자 305명인 버스운송업체가 '18.7.1.이후 주 96시간에서 주 68시간 이내로 단축 **수 주 근로시간 단축제**
- ② 상시근로자 310명인 제조업체에서 '18.7.1.이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 다 주 근로시간 단축제
- ③ 상시근로자 100명인 제조업체에서 '20.1.1.이후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 다 주 근로시간 단축제
- ④ 상시근로자 310명인 제조업 사업장에서 '19.7.1.이후 주 52시간에서 주 50시간으로 추가 단축 ♥ 실 근로시간 단축제

П

지원 요건 (주 근로시간 단축제)

-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
 - □ 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사규 개정을 통해 제도화
- ②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실제 준수(주 최대 68시간 또는 주 최대 52시간)
- ③ 제도 도입 후 근로자 수 증가
- ④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근태 관리
-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사규를 제 · 개정하여야 함
 - 이때,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단축하여 조기단축기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
 -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단위로 도입하여야 함.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연장근로자가 많은 특정 부서 단위, 사업장 단위로도 신청은 가능함(이 경우에는 지원요건도 도입 단위 기준으로 적용)
- ② 주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
 - **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**하던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후 매 3개월간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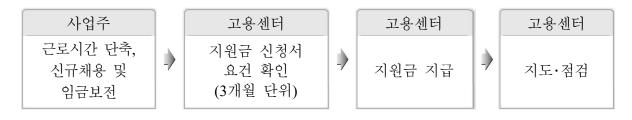
- ③ 월 평균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증가하여야 함
 -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(조기단축)한 날이 속한 달의 **직전 3개월간[®]** (또는 직전 4~6개월^{*®})전까지의 월평균 피보험자수보다 시행한 날이 속한 달의 **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^{©®}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증가**하여야 함



- *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전 기업마다 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시행 전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최초 지원금 신청 시 선택 가능하나, 이후 근로자 수 증가 및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전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산정 기간은 동일하여야 함
- \star (예시)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월 1일 제도 도입시 2 \sim 4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$10\sim12$ 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 수와 비교한 경우, 근로시간 단축 비교도 동일한 기간 $(10\sim12$ 월)으로 산정함
- ④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후 **근로시간 관리는 전자적 방식**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
 - * 1회차 지원금 단위기간까지는 출퇴근 기록부에 따른 근로시간과 임금대장에 기록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등 수기에 의한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

2 지원 체계 (요건심사방식)

- '주 근로시간 단축제'는 사업장이 직접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고용센터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
- 지원체계



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

- □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
- ◈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기준(상시근로자 수)으로 지원

시기기기가 스	증가근로	자 인건비	임금보전		
상시근로자 수		1명 당, 1개월	, 최대금액, 기간		
500인 초과	60만원	· 1, 1년		-	
200 5000]	제조업	80만원 (2년)	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	40만원 (2년)	
300 ~ 500인	특례제외업종 및 기타업종	60만원 (1년)	기타업종	40만원 (1년)	
2000) मोमो	제조업	80만원 (2년)	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	40만원 (2년)	
300인 미만	특례제외업종 및 기타업종	80만원 (1년)	기타업종	40만원 (1년)	

-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300인 이상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500인 초과 기업
 - 증가근로자 인건비: 월 60만원 1년 지원
 - 임금보전: 지원 대상 아님
- 300~500인 기업
 - 증가근로자 인건비: 제조업 80만원 2년, 그 외 60만원 1년 지원
 - 임금보전: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40만원 2년, 기타업종은 1년 지원
- 300인 미만 기업
 - 증가근로자 인건비: 제조업 80만원 2년, 그 외 80만원 1년 지원
 - 임금보전: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40만원 2년, 기타업종은 1년 지원

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조기단축

□ 법정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업은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기업 기준 적용

۸۲al	근로자 수	증가근로자 인건비	임금보전
~ ~ ~ ~ ~ ~ ~ ~ ~ ~ ~ ~ ~ ~ ~ ~ ~ ~ ~	근도사 ㅜ	1명 당, 1개월,	최대금액, 기간
	0인 이상 제외업종	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/ 이후 40만원 (2년)	40만원 (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최소 2년)
300인	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	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/ 이후 80만원 (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, 기타업종은 최소 1년)	40만원 (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, 기타업종은 최소 1년)
미만	기타업종	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/ 이후 80만원 (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, 기타업종은 최소 1년)	40만원 (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, 기타업종은 최소 1년)

-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
 - 증가근로자 인건비: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60만원을 지원,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40만원을 총 2년간 지원
 - 임금보전: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최대 40만원 최소 2년간 지원
- 300인 미만 기업
 - 증가근로자 인건비: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,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 이후는 월 80만원을 지원하되,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, 기타 업종은 최소 1년간 지원
 - 임금보전: 법정시행일까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, 제조업 및 특례 제외업종은 최소 2년간 지원, 기타 업종은 최소 1년간 지원
- 지원기간: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함이 원칙
 -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,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
- ❖ (최대 3년 지원이 가능한 경우) 법정 시행일이 '21.7.1.인 49인 이하 기업이 '18.7.1.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,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

3 노선버스에 대한 지원 특례

▶ 버스업종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대 지원

사지그	그키 스	법정근로시간 단축	52시간 조기단축
상시근	노사 ㅜ	15	명 당, 1개월, 최대금액, 기간
500이 크리	증가근로자 인건비	60만원 (1년)	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/이후 40만원 (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최소 2년)
500인 초과	임금보전	40만원 (2년)	40만원 (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최소 2년)
200 5000]	증가근로자 인건비	60만원 (1년)	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/이후 40만원 (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최소 2년)
300~500인	임금보전	40만원 (2년)	40만원 (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최소 2년)
2000) मोमो	증가근로자 인건비	80만원 (1년)	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/이후 80만원 (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최소 2년)
300인 미만	임금보전	40만원 (2년)	40만원 (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최소 2년)

- 500인 초과 기업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임금보전은 월 최대 40만원 2년간 지원
- 증가근로자 1인당 기존 재직자 20명까지 임금보전 실시
- 조기단축 기업 지원시 법정 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, 2년간 지원
 -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증가근로자 인건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60만원/100만원을 지원하고, 그 이후는 40만원/80만원 지원
-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시간 단축도 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지원
 - * 법정근로시간 내 근로시간 단축이란 68시간~52시간 사이의 단축을 의미. 52시간 내에서의 단축은 실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지원(특례제외업종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'18.7.1. 특례제외로 인해 68시간으로의 단축을 포함)

참 고 노선버스업종 대상 사례별 지원방식

- ① 법정근로시간 내의 단축(66→53): 주 근로시간 단축제에 의해 지원
- ② 법정근로시간 단축(70→66): 주 근로시간 단축제에 의해 지원
- ③ 조기단축기업(66→51): 조기단축기업의 지원례에 의해 지원
- ④ 52시간 내의 단축기업(52→50): 실 근로시간 단축제에 의해 지원(공모)

지원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지원금 산정방법

조기단축 기업 판단

요건	검토 내용					
① 조기단축 시행	►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법정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 -(업종)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, 특례제외 업종(21개) 해당 여부 -(상시근로자 수) 조기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1일 평균 근로자 수 * 예) 상시근로자 312명 시내버스업체의 법정시행일은 '19.7.1.					
	▶노·사간 협약에 따른 조기단축 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					
	▶조기단축일이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에 단축했는지 확인					
② 근로자 과반수 동의	▶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,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					
③ 노·사간 협약	▶노·사간 협약서(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)에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 ※ [붙임 4] 참조					
④ 근로시간 단축	► 조기단축일이 속한 달의 직전 4~6개월간 또는 직전 1~3개월과 조기단축일이 속한 달의 다음 3개월을 비교하여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는지 확인					

- ❖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확인서 발급
 - * 근로감독 부서에서 발행하는 확인서와 동일 효력 발생
- 일자리함께하기 조기단축 사업장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한해, 사업장의 신청으로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 확인서 발급 가능
- 지방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
 -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 가능
- 고용센터는 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명단을 근로감독부서와 즉시 공유하고, 근로감독 부서는 '확인서 발급 사업장 명단'을 총괄 관리
- 사업주는 동 확인서로 타 부처의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신청 가능

상시근로자 수 판단

- ○「근로기준법」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에 의해 산정
 - *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법 적용일 기준으로 1회차 지원금 지급시 한번만 판단, 조기단축 기업의 경우 조기단축일 기준으로 판단,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여부는 매 분기 지원금 신청시 마다 최초 신청 가능일 기준으로 판단
- 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(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7조의2)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(이하 '산정기간'이라 한다)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
 - \bigcirc 상시근로자 $\phi = \frac{\text{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}}{\text{산정기간 중 가동일수}}$

근로시간 단축 요건 충족여부

- 기업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**주 평균 근로시간[®]이**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
 - * 근로시간 단축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산정
 - 단축 시간 =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*의 주 평균 근로시간[∅]) -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단위 주 평균 근로시간⁽⁹⁾
 - 주 평균 근로시간은 개개인별로 산출하지 않고 기업 전체의 근로시간을 피보험자 수로 나누어서 산정
 - *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사용하는 피보험자 수는 매월말 피보험자 수로 함
 - * 다만. 제도 도입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사용하는 피보험자 수는 입사. 휴가, 병가, 휴직,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월에 실 근무일수가 소정 근로일의 50% 이하인 경우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피보험자수와 근로시간 산정시 제외 가능
 - ※ 단축시간(②-④)은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 서식을 통해 확인, 소수점 세번째 자리이하 버리고 계산

예 시

도입 전 근로시간은 54.55, 도입 후 근로시간은 50.00인 경우

- 단축시간은 54.55 - 50.00 = 4.55

◈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 서식

		도입] 전 ^① (-	고정)		도입 후 ^②				
근로시간	1월 (4월)	2월 (5월)	3월 (6월)	합계	3개월 평균	8월	9월	10월	합계	3개월 평균
기업 전체 합계(A)										
근로자 1인당 월평균®										
근로자 1인당 주평균©					7					4

<작성방법>

- * B=A/피보험자 수, * C=B/(해당 월의 총 일수/7일)
- ① 도입 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(별첨 ^[2]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」, ^[3]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산식」과 동일한 기준(직전 4개월 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
4 증가근로자 수 산정

- (지원한도)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 기준으로 15시간당 1명
 - **지원인원 한도** = 단축시간(⑦-ⓒ) ×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/ 15시간
 - → 단축 시간 =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(또는 4~6개월)의 주 평균 근로시간[®])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단위 주 평균 근로시간[®])
 - ※ 단축시간(⑦-⑥)은 소수점 세번째 자리이하 버리고 계산 후 지원인원 한도는 소수점 이하 올림으로 계산

> 예 시

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20.22명, 단축시간의 합이 4.55시간인 경우: 7명

- (4.55 × 20.22명 = 92.001) ÷ 15시간 = 6.1334
- 지원인원한도는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7명

- (지원인원)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
 - 증가근로자 수 =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평균 근로자 수) - (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(또는 4~6개월)의 평균 근로자 수)
 - 다만,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산정시 제도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근로자(p.15)를 제외하고 산정(제도도입 전 월말 피보험자수는 그대로 산정)
 - * 주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전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최초 지원금 신청시 직전 4~6개월 전 또는 직전 3개월간으로 선택 가능(다만, 이후 산정기준이 되는 시행 전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산정기간은 동일해야 함)
 - ※ 제도 도입 전·후 각 3개월 단위 평균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3으로 나누어 산정. 소수점 세번째 자리이하 버리고 계산 후 최종 증기근로자 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
 -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근로자 수 산정내용(서식) 및 고용보험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
- 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대상 근로자 수 산정 사례
- ① 제도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근로자가 없는 경우 <예시> 근로시간 단축일이 7.1일인 경우
- 증가 근로자수 = [(8월말 + 9월말 + 10월말 피보험자 수) ÷ 3] [(4월말 + 5월말 + 6월말 피보험자 수)÷3]

3개월 월 평균 근로자											증가
도입 전(고정)								도입 후	<u> </u>		근로자수
구분	1월 (4월)	2월 (5월)	3월 (6월)	합계	평균	8월	9월	10월	합계	평균	
예시	568	567	561	1,696	565.33	580	595	616	1,791	597	31.67 → 반올림 32명
작성											

- 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대상 근로자 수 산정 사례
- ② 제도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근로자가 있는 경우

<예시> 근로시간 단축일이 7.1일인 경우

- 증가 근로자수 = [(8월말+9월말+10월말 피보험자 수)÷3] [(4월말+5월말+6월말 피보험자 수)÷3]
- * 8,9,10월 말 피보험자 수는 7월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

구분	4월 말	5월 말	6월 말	7월 말	8월 말	9월 말	10월 말		
피보험자수(A)	568	567	561		580	595	616		
신규피보험자				32	22	35	35		
신규채용 피보험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 수(B)				12	18	23	23		
(A) - (B) * 제도도입 후에만 적용					562	572	593		
평균 피보험자 수		565.33			575.66				
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		·	10.33 -	10.33 → (반올림) 10명					

- ** 근로자수 산정시 소수점 세 번째 자리이하 버리고 계산 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
- (기간 및 주기) 지원 기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, 지원기간은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

> 예시 ①

근로시간 단축일이 '18.7.1일인 경우

- 11월에 1회차(지원기간: '18.8.1.~'18.10.31.) 지원금 신청
- ① 1회차: '18.11월, ② 2회차: '19.2월, ③ 3회차: '19.5월, ④ 4회차: '19.8월

) 예시 ②

근로시간 단축일이 '20.1.1일인 경우

- 5월에 1회차(지원기간: '20.2.1.~'20.4.30.) 지원금 신청
- ① 1회차: '20.5월, ② 2회차: '20.8월, ③ 3회차: '20.11월, ④ 4회차: '21.2월

임금감소액 보전금액 산정 5

- 산정방법: 단축 전 급여총액의 근로시간 비례금액(기준임금)을 단축 후 3개월 급여총액과 비교하여 개개인의 임금보전분 산정
 - * 노사합의 등을 통해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하기로 정해 개인별 월별 임금보전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서식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, 노사합의문 및 임금대장 등으로 지급 확인

임금보전금액 = 단축 후 급여 $^{\circ}$ - 단축 전 급여 $^{\circ}$ × $\left(\begin{array}{c}$ 단축 후 총 근로시간 $^{\circ}$ $\end{array}\right)$

- ① 근로시간 단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월평균 급여
- ② 근로시간 단축일의 직전년도의 월평균 급여
 - * 1년 미만 근무자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 산정 :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제도도입일 직전 달까지의 급여의 평균액(임금대장으로 확인)으로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 대체하여 산정
- ③ 근로시간 단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월 평균 근로시간 (산정방법) 소정근로시간 + (1.5 × 초과근로시간*)
 - * '18.7.1. 개정「근로기준법」시행 전의 휴일근로시간 포함
- ④ 근로시간 단축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또는 이전 6개월~4개월까지 월 평균 근로시간 (산정방법) 소정근로시간 + (1.5 × 초과근로시간*)
 - * '18.7.1. 개정「근로기준법」시행 전의 휴일근로시간 포함
- ⑤ 임금보전금액은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하고, 3개월분을 지급
 - * 근속기간에 따라 월(일)할 계산 지급
- 임금보전분은 지원 단위기간 별로 산정하여 지급

예시

7.1일 근로시간 단축시

- ① 단축 전 3개월(1,2,3월):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 500만원,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단축 4~6개월 전 3개월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30시간
- ② 단축 후 3개월(8,9,10월): 평균 급여 470만원, 소정근로시간 174시간.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 10시간
- ③ 기준임금: 500 × ((174 + 1.5 × 10) ÷ (174 + 1.5 × 30)) = 431.5만원
- ④ 임금 보전 금액: 470만원 431.5만원 = 38.5만원 * 임금 보전금액이 12만 5천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
- ⑤ 지원금액: 38.5만원 × 0.8 = 30.8만원
- ⑥ 분기당 지원급액: 30.8만원×3개월
 - * 급여는 임금대장의 총액 통해 확인

◈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산정 서식

성 명	주민 등록 번호	도입 전 월 소정 근로시간 (a)	도입 후 월 소정 근로시간 (b)	도입 전 [®] 3개월 평균 초근시간 (c)	도입 후 ^② 3개월 평균 초근시간 (d)	직전 년도 월평균 급여 (e)	단축 후 3개월 평균 급여 (f)	기준 임금 (p)	임금 보전 금액 (g)	지원 금액 (h) (g×0.8× 개월 수)
홍길동										

<작성방법>

- ※ 임금보전금액(g)= f-p 기준임금(p)= $e \times \frac{(b+1.5d)}{(a+1.5c)}$
- ① 도입 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(별첨 「1.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」,「2.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」과 동일한 기준(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 - * 다만, 노사합의 등을 통해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하기로 하여 개인별 임금 보전액을 임금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(a)~(p)는 작성 생략<(g)와 (h)만 작성>
- ③ 개인의 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산정될 경우 도입 전 3개월 평균 초근시간은(c)는 올림으로 도입 후 3개월 초근시간(d)은 내림을 하여 정수로 기입
- * 1년 미만 근무자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 산정: 입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제도도입일 직전달까지의 급여의 평균(임금대장으로 확인)으로 직전년도 월평균 급여 대체하여 산정
- (지원금액)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% 한도로 월 최소 10만원, 최대 40만원을 지원
 - *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12만 5천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
- (지원대상) 임금보전 대상 재직자(기존 근로자)는 제도도입일 한 달 이전 입사자까지 대상
 - * (예시) 7월 1일 제도도입시 5월 31일 이전 입사자까지 기존 재직자로 지원 가능
 - 증가근로자 수 산정시 제도도입일이 속한 달의 직전 4~6개월을 기준 으로 산정한 경우 4개월 이전 입사자까지 보전 대상
 - * 제도도입일 전 1~3개월 사이 입사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가능
 - * (예시) 7월 1일 제도도입시 8~10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1~3월까지의 월평균 근로자 수와 비교한 경우 3월 31일 이전 입사자까지 재직자로 지원
- (지원한도)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
 - *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버스업종에 한해 증가근로자수 1인당 기존재직자 20인까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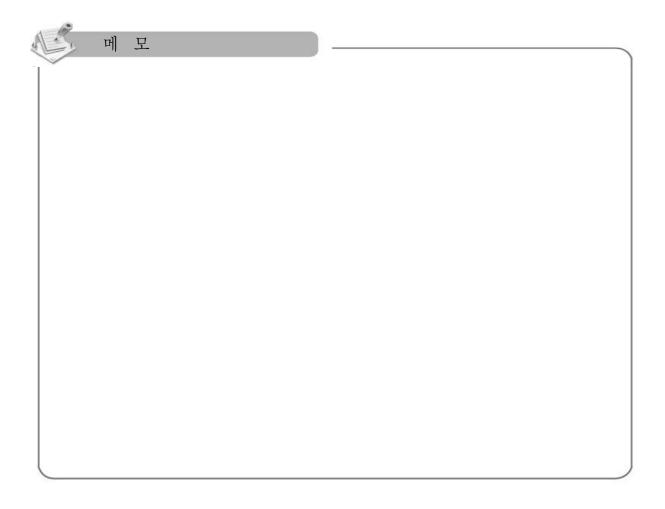
지원제외 근로자 (증가근로자 인건비에만 적용)

○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

- 가.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- 나.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- 다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라.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
-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㈜중증장애인 ®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
- ② 취업성공패키지 [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
 - ① 기초생활수급자 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© 북한이탈주민 ② 신용회복지원자
 - □ 결혼이민자 🗈 위기청소년 🕓 여성가장 ⊙ 건설일용직 🗵 장애인 🕏 니트(NEET)족
-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A 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훈련) B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-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
-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
-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
- ⑦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
-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**최저임금 100% 미만의 임금**을 지급받은 근로자. 다만, 해당 근로자가 「최저임금법」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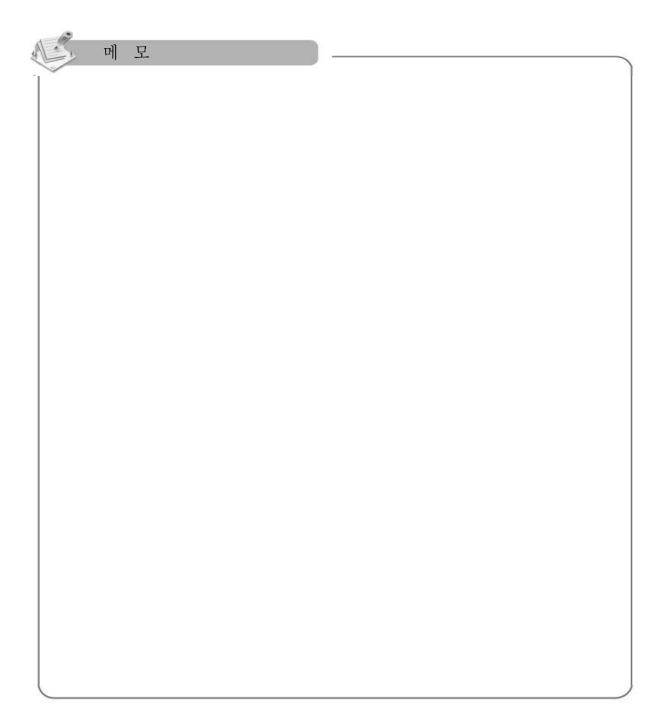
- 비상근촉탁근로자.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
-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
- 고용 후 **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**. 다만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지원 가능
- **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**. 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지원 가능
- 고용보험·건강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 등 **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**
-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**60시간 미만인 근로자**(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)



지원제외 사업주

- **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(**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관)
- 부동산업, 일반유흥·무도유흥·기타 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**해당 근로자의 이직**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
 - *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지원
-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**해당 근로자의 이직**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(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.
 - *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지원
 - 가.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 - 나.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
 - 다.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
 - 라.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받은 사업주인 경우

- ○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 받으려는 경우
- **신청일 기준*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**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 받으려는 경우
 - * 매 분기 지원금 신청시 마다 최초 신청 가능일의 직전달 상시근로자로 판단 예시) '19.1월~3월의 지원금 신청 가능일은 '19.4.1이고, 3월 한 달 동안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됨



제출 서류 및 참고사항

제출 서류

지원내용	제출서류
조기단축 기업지원	▶ 근로시간 조기단축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증가근로자 인건비	 ►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노·사간 협약서 (특례제외업종의 경우 68시간, '19.7.1.) ►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 ►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근로자명부, 임금대장 등) ►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 서식(별지 제22호 첨부서류 1) ► 일자리 함께하기 증가근로자 수 산정서식(별지 제22호 첨부서류 2) ► 일자리 함께하기 신규 고용 근로자 현황 서식(별지 제22호 첨부서류 4) ► 신규 채용한 인원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
임금감소분	►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금액 산정서식(별지 제22호 첨부서류 3) ► 지원대상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

※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(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) 등 제출 서류의 원자료는 장려금 수급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함

참고사항

-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주된 업종, 상시근로자 수 및 지원제외 사업주 판단 기준은 "사업" 단위로 판단
 - * 주된 업종은 근로자 수, 임금총액, 매출액 순으로 결정
- 특례유지업종인 사업체가 노사간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에 대해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5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더라도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
 - * 특례제도 미도입 사업장은 개정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한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. 5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
-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일 기준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(매 신청 가능일 직전 달의 상시근로자수로 판단)
 - * 예시) 근로시간 단축일이 '20.1.1일인 경우, '20.4월, '20.7월 등의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
 - 다만, 제도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 작성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함

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Q&A

1 추진배경



- 1.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워제도가 필요한 이유는?
-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①신규고용 인건비, ②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



- 2. 이미 주 최대 52시간제를 시행한 기업은 지원이 안 되나요?
- '18.3.1일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이 아닌 경우 주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대상 아님
-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기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었음
- 주 최대 52시간제를 이미 준수하고 있는 기업도 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



- 3. 법정 시행일보다 늦게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?
-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음
- 다만, 법 시행일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법 시행일보다 늦게 단축한 경우만큼 지원기간에서 제외됨
- 즉,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법 시행일보다 6개월 늦게 단축하면 근로시간을 단축한 6개월의 기간만 지원 가능함



- 4.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요건심사로 한 이유는?
- 요건심사 방식이란, 사전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 없이 개정「근로기준법」시행시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사후에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하는 방식임
-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건심사 방식으로 추진함
 - ※ 기존 공모제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사업주가 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 지원하는 공모방식으로 운영했음

지원요건



- 5.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?
- ①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사규 개정, ②주 최대 52시간제 준수, ③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관리, ④단축 후 근로자수 증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

- 6. 취업규칙은 어떤 내용을 개정해야 하나요?
- ○「근로기준법」의 취지에 따라 1주간의 정의와 연장근로(휴일근로 포함)는 1주간 12시간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됨
 - ※ 도입가이드 p.39 참고(주 최대 52시간 도입 관련 취업규칙 변경 예시)



7. 제도 도입 전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기업은 지원이 안 되나요?

-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대상이 아님
- 다만,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로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 공모방식(교대제 전환, 실 근로시간 단축 등)의 유형으로 지원 가능함



- 8. 우리 기업은 특정부서만 연장근로가 많고, 다른 부서는 연장근 로가 거의 없는데 기업 단위로만 도입이 가능한지?, 연장근로가 많은 부서만 도입도 가능한지?
- 법정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는 기업 단위로 적용. 다만, 기업의 여건에 따라 연장근로가 많은 부서, 지사, 직종 단위로도 도입 가능함
- 다만, 부서 단위로 도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범위도 도입 부서의 증가 근로자수, 임금감소 근로자에게만 적용함(다른 부서에서 증가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님)



9. 제도 도입 후에는 법정근로시간을 꼭 준수해야 지원이 되는지?

- 네. 그렇습니다.
- 지원금은 지급 대상기간인 매 3개월간 도입 단위의 주당 평균근로 시간이 개정 법정근로시간 한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지원됨



- 10. 도입 후 3개월 평균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 최대 52시간을 초과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. 도입 후 3개월 중 일부 근로자가 불 가피하게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?
-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3개월 단위로 기업 또는 부서의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보고 지원을 함. 따라서, 특정 월에 일부 근로자의 주 평균 52시간이 초과되더라도 그 달이 속한 분기가 52시간 이내로 유지된다면 지워이 가능함.



- 11.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위해 제도 도입 전과 후 3개월을 비교 하는 이유는?,
 - 제도 도입 이전 비교기간을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4~6개월 2 개의 구간으로 한 이유는?
- 근로시간 단축 여부 비교 시 특정 월의 쏠림으로 일상적 근로시간 단축이 왜곡되지 않도록 3개월 평균으로 비교하도록 한 것임
- 아울러 개정「근로기준법」의 국회 통과('18.2.28.)와 300인 이상 기업의 시행일('18.7.1.)의 간격이 짧았음을 고려, 기업의 형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 계획의 여건이 다를 수 있어 도입 전 기준 구간은 2개의 구간 중 기업으로 하여금 유리한 구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임



12. 제도 도입 후 신규채용을 하였으나, 기존 재직자가 퇴사하 여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지?

- 지원요건이 맞지 않음
- 특정 개인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과 달리 특정 분기의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경우를 지원요건을 하고 있음
- 다만,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고용조정 등 감원방지의무가 적용 되지 않고,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고 있음



- 13.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?. 업무 특성상 전자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에 는 지워이 안 되는지?
-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상 근로시간 단축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
- 사업장 밖 근로가 많은 업종 및 직종의 특성상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가 곤란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간주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수기에 의한 기록을 인정하고 있음



- 14. 조기단축기업이라?.
 -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법 시행일이 '20.1.1인데, 조 기단축기업으로 지원받기 위해 언제까지 단축해야 하는
- 기업 규모별 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의미함
- '20.1.1. 시행일인 50~299인 기업의 경우 '19.7.1. 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6개월 이상 조기단축기업 수준으로 우대 지원
- '20.1.1. 시행일인 50~299인 기업의 경우 '19.7.2.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6개월 미만으로 법정단축기업 수준으로 지원



- 15. 지원요건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한 이유는?, 여기서 말하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?
- 고용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으로 구분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우대지원하고 있음
- 반면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법 시행일이 달라, 불가피하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지원수준을 달리하였음
- 상시근로자수는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제7조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



16. 조기단축의 경우 업종별 및 규모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미만일 경우 2년간 지원하고,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일 경우 1년간 지원함

※ (예시) 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업종별/조기단축기간별 지원기간

		법	조기	법시행일←	→	지원	수준
연번	구분	시행일	단축일	조기단축일 차이	I 지원기간	법 시행일까지	법 시행일이후
1	제조업 190명	'20.1.1.	'18.12.31.	2년 미만	2년	'19.1월~'20.1월 (100만원) (13개월)	'20.2월~'20.12월 (80만원) (11개월)
2	제조업 20명	'21.7.1.	'18.8.1.	2년 11월	2년11월 (35개월)	'18.9월~'21.7월 (100만원) (35개월)	-
3	노선버스 310명	'19.7.1.	'18.11.1.	2년 미만	2년	'18.12월~'19.7월 (60만원) (8개월)	'19.8월~'20.11월 (40만원) (16개월)
4	노선버스 55명	'20.1.1.	'18.7.1.	2년 미만	2년	'18.8월~'20.1월 (100만원) (18개월)	'20.2월~'20.7월 (80만원) (6개월)
5	기타 업종 70명	'20.1.1.	'19.2.1.	1년 미만	1년	'19.3월~'20.1월 (100만원) (11개월)	'20.2월 (80만원) (1개월)
6	기타 업종 70명	'20.1.1.	'18.8.1.	1년 5월	1년5월 (17개월)	'18.9월~'20.1월 (100만원) (17개월)	-





- 17. 근로시간 단축 요건 판단시 제도 도입 전 1개월 기준 실제 재직일수가 적어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피보험자와 근로시 간 산정에 포함하는지?
- 지원 여부 검토의 편의성을 위해 기업(도입단위) 전체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와 이들의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임
- 다만, 제도 도입 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산정시 재직자 중 에 입사, 휴가, 병가, 휴직,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월에 실 근무일수 가 만근일의 50% 이하인 경우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사 실을 입증하고 피보험자수와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제외하고 산정 가능



- 18. 월말 피보험자수에 포함된 근로자는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지?. 지원 제외되는 근로자는 어떤 경우인지?
- 지원대상 증가 근로자 수 산정시 지원 제외 근로자는 빼고 계산해야 함
- 도입가이드 지원제외 근로자(p.15~16) 유형 참고



- 19. 증가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액은 신청이 가능한지?
- 신규 채용자 지원이나 임금감소 보전금액 지원이 가능하려면 근로자가 1명이상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, 이때 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제외 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이 되어야 함
- 즉, 증가된 근로자가 지원제외 근로자(비정규직 등)라고 한다면 신규 채용과 임금감소 보전금액 모두 지원이 되지 않음



20. 육아휴직 등 휴직에 들어간 인원은 월말 피보험자수에 포함하는 지?.

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 산재를 당한 경우, 산재 기간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지?

- 육아휴직 근로자도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면 월말 피보험자수에 포함하여 계산함
- 신규 채용근로자가 추후 산재를 당하여 휴직중일지라도 회사 재직 중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월말 피보험자에는 포함됨
- 다만, 산재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보전 대상이 되지 않음

지원제외 사업주



- 21. 상호출자제한기업이란?. 해당 기업여부의 확인 방법은?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



22. 5인 미만 사업주도 지원이 되는지?

- 5인 미만 사업주는 「근로기준법」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규칙 신고의무도 없어 지원 제외가 원칙임
- 다만, 매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이 제도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 등을 제 개정하여 시행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
- 즉, 근로시간 단축일이 '20.1.1일인 경우에는 '20.4월, '20.7월 등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회차('20.2~4월), 2회차('20.5~7월) 등의 회차를 지워함



23. 수습 또는 시용으로 채용하는 관행에 따라 수습 또는 시용 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이 되는지?

-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
-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란 채용 당시 기준으로 근로계약의 시기만 있고 종기가 없이 계속근로를 내용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함
- 이에 따라, 수습, 시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채용 당시 근로계약의 시기와 종기를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지원대상이 아님

7

지원제외 근로자



24. 기존 재직자가 퇴사하였다가 바로 촉탁직으로 재입사할 경우 기존 재직자로 계속 지원하는지?

- 기존 재직자가 퇴사하였다가 바로 재입사를 하더라도 기존 재직자가 될 수 없고, 신규채용 근로자에 해당함
- 퇴사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로써 인건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함.
- 다만,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



- 25. 버스회사입니다. 다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고, 우리 회사에 촉 탁직으로 채용됐을 경우.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근로계 약을 해도 되는지?
- 노선버스업종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주에게서 퇴사한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
- 다만, 다른 회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해서 지원 받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2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면 지원대상이 됨



- 26. 지원제외 근로자 및 사업주는 증가근로자 인건비 산정에만 적용되는지? 아니면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에도 적용되는지?
- 증가근로자 인건비 지원에만 적용됨
- 따라서, 기존 재직자는 증가근로자 인건비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금이 있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함

기타사항



27. 다른 고용장려금도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을 위해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요건이 되는 실업자를 채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되는 경우 다른 고용창출장려금도 지원이 가능함
- 다만, 「고용보험법」 상 상호조정 기준에 따라 다른 고용창출장려금은 70%만 지원이 됨



- 28.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도 도입을 증명하기 위해 취업규칙 을 작성해야 하는지?
-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없으나, 제도도입을 증명하고,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취업규칙에 준하는 서류를 작성·제출해야 함



- 29. 다수를 지원하는 장려금이라서 지원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운데, 간단하게 참고할 수 있는 모의계산 자료가 있는지?
- 고용노둥부 홈페이지(공지사항)에서 모의계산 엑셀서식을 받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음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 공지사항 '고용장려금 지원제도' 검색 하여 첨부 5번째 파일 '모의계산 서식' 다운로드 가능함
- 다만, 실제 지원금액은 지원제외 근로자 포함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모의계산을 위해서만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림



메모

붙임

- 1. 근로시간 단축 관련 「근로기준법」 주요내용
- 2.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유형(공모방식)
- 3. 주 근로시간 단축형 지원(예시)
- 4.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변경(예시)
- 5.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(서식)
- ☎ 전국 고용센터(기업지원 부서) 연락처



--- 〈기본방향〉

- ◈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,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,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'국민의 휴식 있는 삶'과 '일·생활의 균형' 실현
- ① 연장·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(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)
 - ▲ 300인 이상: '18.7.1.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'19.7.1.부터 시행),
 - ▲ 50~300인 미만: '20.1.1., ▲ 5~50인 미만: '21.7.1.
- ②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('21.7.1.~'22.12.31.)
 - *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
- ③ **18**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('18.7.1 시행)
 - \star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\to 1주 35시간.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\to 1주 5시간
- 4 **휴일근로 할증률 명시**(공포 즉시 시행, '18.3.20.)
 - * 8시간 이내 50%, 8시간 초과 100%
- 5 특례업종 축소(18.7.1 시행),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('18.9.1 시행)
 - * 특례 유지 5개 업종: ①육상운송업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), ②수상운송업, ③항공운송업,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, ⑤보건업
- 6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(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)
 - ▲ 300인 이상: '20.1.1., ▲ 30~300인 미만: '21.1.1., ▲ 5~30인 미만: '22.1.1.
- 기 부대의견 및 부칙: 5개 특례업종, 공휴일 민간 적용,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·지원방안 마련

<참고: 근로시간 단축 주요 개정내용 시행시기>

항목	규모	'18.3.20. (공포)	'18.7.	'19.7.	'20.1.	'21.1.	'21.7.	'22.1.
주 근로시간	300인~	('18.7.1.) (특례 제 '19.7		₽				
단축 (68→52시간)	50~299인 (특례 제외 업종 포함)			('20.1.1.)	⇔			
	5~49인 (특례 제외 업종 포함)					('21.7.1.)	\Rightarrow	
	300인~			('20.1.1.)	⇔			
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	30~299인				('21.1.1.)	⇨		
	5~29인						('22.1.1.)	分
특례업종 축소	제외(21개)	('18.7.1.)	\Rightarrow					
(26→57引)	유지(5개) 11시간 연속휴식 (특례도입시)	('18.9.1.)	\Rightarrow					
18세 미만 근로시간 단축	1인 이상	('18.7.1.)	⇔					
휴일근로 할증율	5인 이상	('18.3.20.)						

붙임 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유형(공모방식)



-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 지원
 - * ① 교대제 개편, 일자리 순환제, 실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
 - ②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.

(예시: 68→60시간, 52→50시간으로 단축, 특례제외업종(버스운송업 제외)은 법정근로시간(68시간)내 단축)

③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지원

<지원 수준>

	ㄱ ㅂ	증가근로자 인건비	임금보전		
	구 분	1명 당, 1개월,	최대금액, 최대기간		
刊	우선지원 대상기업	80만원, 1년	40만원, 1년		
제 조	중견기업	40만원, 1년	40만원, 1년		
업	대규모기업	40만원, 1년			
	우선지원 대상기업	80만원, 2년	40만원, 2년		
조	중견기업	40만원, 2년	40만원, 1년		
업	대규모기업	40만원, 1년	-		

- 지원 체계(교대제 개편, 일자리 순환제, 실 근로시간 단축제)
 - * 특례제외업종이 68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도 포함

사업주		고용센터		사업주		고용센터
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	->	심사 및 승인 통보	•	근로시간 단축 및 신규채용 등 제도도입 시행	>	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

붙임3 주 근로시간 단축형 지원(예시)



구분	사례1	사례2	사례3
상시근로자 수	350명	200명	40명
주52시간제 적용일	'18.7.1.	'20.1.1.	'21.7.1.
업종	제조업	제조업	제조업
도입 전 주당 근로시간(취업규칙)	68 소정 40 연장 12, 휴일 16	68 소정 40 연장 12, 휴일 16	68 소정 40 연장 12, 휴일 16
도입 전 주당 근로시간(실제)	62 소정 40 연장 12, 휴일 10	60 소정 40 연장 12, 휴일 8	60 소정 40 연장 12, 휴일 8
도입 후 주당 근로시간(취업규칙)	52 소정 40 연장(휴일포함) 12	52 소정 40 연장(휴일포함) 12	52 소정 40 연장(휴일포함) 12
도입 후 주당 근로시간(실제)	50 소정 40 연장(휴일포함) 10	49 소정 40 연장(휴일포함) 9	48 소정 40 연장(휴일포함) 8
단축 근로시간	12h(62h-50h)	11h(60h-49h)	12h(60h-48h)
증가근로자 인건비 지원인원 한도	280명 (12h×350명/15h)	147명 (11h×200명/15h)	32명 (12h×40명/15h)
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	350명	200명	40명
도입 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	400명	220명	55명
신규채용을 통해 증가한 피보험자 수	50명	20명	15명
증가근로자 인건비 지원금액(분기)	1.2억원 (80만원×50명×3월)	0.48억원 (80만원×20명×3월)	0.12억원 (80만원×15명×3월)
임금감소액 보전인원 한도 *증가근로자 지원 1명당 10명까지 지원	500명 (50명×10명)	200명 (20명×10명)	150명 (15명×10명)
사업주 임금보전	350명	200명	40명
사업주 임금보전액 (사업주가 1인당 월 50만원 보전 가정) *사업주 지급 보전임금의 80% 한도 지원	5.25억원 (350명×50만원×3월)	3억원 (200명×50만원×3월)	0.6억원 (40명×50만원×3월)
임금감소액 보전지원(분기)	4.2억원 (350명×40만원×3월)	2.4억원 (200명×40만원×3월)	0.48억원 (40명×40만원×3월)
지원금액 합계(분기)	5.4억원	2.88억원	0.6억원

붙임 4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 변경(예시)



- ① 개정「근로기준법」내용: 연장·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
- (1) 1주 근로시간의 한도
 - 휴일·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임 (1주는 7일)

현 행	개 정 후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	제2조(정의) ①
뜻은 다음과 같다.	
<u><신 설></u>	7. "1주"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

② 취업규칙 변경 필요 사항

- (1) 1주 근로시간의 한도 명시 필요
- 휴일·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임 (1주는 7일)

개 정 전	개 정 후
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: 68 또는 60시간	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: 52시간
* 68시간 = 40시간 + 12시간 + 16시간 (휴일이 2日일 경우)	* 52시간 = 40시간 + 12시간
* 60시간 = 40시간 + 12시간 + 8시간, (휴일이 1日일 경우)	

○ 취업규칙 변경 예시

변경 전 취업규칙 예시	변경 후 취업규칙 예시
제00조(근로시간)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.	제00조(근로시간) ①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.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.
제00조(연장 및 휴일근로)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.	제00조(연장 및 휴일근로) ① <u>연장 및 휴일</u> <u>근로</u> 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.

붙임 5 주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

	^{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} 금(□ 주 근로시간 단)」 지급 신청서		
	성하시기 바랍니다.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		(1쪽)		
1. 사업장 개요					
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			
대표자		업종 ^①	코 드() 항목명()		
상시근로자수	□ 500명 초과 □ 300명 이상 500명 미만 □ 300명 미만	상시근로자 수 ^②	명		
주 근로시간 단축일 (조기단축일)	년 월 일 (년 월 일)	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③	□ 해당 □ 비해당		
국가, 자치단체, 공공기된 여부	^{1.4} □ 해당 □ 비해당	300명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^⑤ 여부	□ 해당 □ 비해당		
부동산업 등 중2 제2조에	노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서 정한 업종 [®] 여부	□ 해당 □ 비해당			
예금주		은행			
		계좌번호			
담당자	성명	전화번호	_		
2. 신청 내용 : 사업주	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인	척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 -	함 🗆		
). J	· 나업참여 유형	신청내			
		신청인원	신청금액		
□ 법정근로시간 단축	증가 근로자	명	원		
□ 조기단축 □ 법정근로시간 단축	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	명	원		
(노선버스 [®] 특례) □ 조기단축 (노선버스 [®] 특례)	신청기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	
3. 조기단축 기업의 🤇					
노동시간 단축 확인서	발급 희망 여부	□ 예 □ 아니오			
4. 조정 : 일자리 함께 70%까지 지	하기와 다른 고용창출장려금 중복 급받을 수 있으며, 이미 수급한	록시 일자리 함께하기는 전액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음 [®]	지급하고 다른 장려금은		
지원금 수급 여부		□ 예 □ 아니오			
중복지원시 상계처리	동의 여부	□ 예 □ 아니오			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 지급을 신청합니다.	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7		_		
	○○지방고용노동청	년 월 일 신청인(디 당(○○지청)장 귀하	[표): (인)		
첨부서류 1.근호	· -계약서 2.월별임금대장 3.임금지급증		}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[®]		
접수번호	접수 연월일				

과장

소장

결재 연월일

담당

팀장

선람

작성방법

ㅇ 업종

- ① 표준산업분류표 5자리 코드 기준으로 작성
- ㅇ 상시근로자 수
 -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(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제7조의2)
 -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(이하 '산정기간'이라 한다)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
- ㅇ 임금체불 명단 공표 사업주
 - ③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ㅇ 공공기관
 -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알리오 시스템(www.alio.go.kr)을 통해서 확인
- ㅇ 상호출자제한기업
 - ⑤ OPNI 기업정보포탈(http://groupopni.ftc.go.kr)을 통해서 확인
- ㅇ「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서 정한 업종
 - ⑥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(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)
- ㅇ 노선버스 특례 적용 업종
 - ⑦ 표준산업분류표 상 49212 시내버스 운송업, 49220 시외버스 운송업
- ㅇ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비율(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39호)
 - ⑧ 상호조정

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「고용보험법 시행령,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

- 1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: 70%
- 2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"1"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: 100%

ㅇ 첨부서류

- 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
- 1.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도입 전후의 취업규칙, 단체협약, 근로자동의서,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)
- 2. 사업장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 등)
- 3.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근로자 명부, 임금대장 등)
- 4.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대장

1.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

		근로시간												
		도약	립 전 [⊕] (.	고정)		도입 후 ^②								
	1월 (4월)	2월 (5월)	3월 (6월)	합계	3개월 평균	8월	9월	10월	합계	3개월 평균				
기업전체 합계(A)														
근로자 1인당 월평균®														
근로자 1인당 주평균©					2					4				

<작성방법>

- * B=A/매 월말 피보험자 수, * C=B/(해당 월의 총 일수/7일)
- ① 도입 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(별첨 「2.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」, 「3.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산식」과 동일한 기준(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
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, 「고용보험법」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(반환, 지급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

2.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

3개월 월 평균 근로자											
도입 전 ^① (고정) 도입 후 ^②								근로자수			
구분	1	2	3	합계	평균	8	9				
ナ	10	11	13	34	11.33	15	15	17	46	15.66	4.33 → 반올림 4명

<작성방법>

- ① 도입 전 3개월 월 평균 근로자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(별첨 1.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」, 「3.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산식」와 동일한 기준(**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** 기간 또는 직전 3개월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
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, 「고용보험법」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(반환, 지급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.

3. 일자리 함께하기 임금감소분 보전 서식

성 명	주민 등록 번호	도입 전 월 소정 근로시간 (a)	도입 후 월 소정 근로시간 (b)	도입 전 ^① 3개월 평균 초근 시간 (c)	도입 후 ² 3개월 평균 초근 시간 (d)	직전 년도 월평균 급여 (e)	단축 후 3개월 평균 급여 (f)	기준 임금 (p)	임금 보전 금액 (g)	지원 금액 (h) (h=g×0.8 ×개월 수)
홍길동										

<작성방법>

- ※ 임금보전금액(g)= f-p 기준임금(p)= $e imes \frac{(b+1.5d)}{(a+1.5c)}$
- ① 도입 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작성(별첨 「1. 일자리 함께하기 주당 근로시간 확인서」, 「2.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 수 산정서식의 근로자수 산정서식」과 동일한 기준(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)으로 작성)
- ② 도입 후 근로시간: 주 근로시간 단축 도입한 날의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기준으로 작성
 - * 다만, 노사합의 등을 통해 개인별 임금보전액을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하기로 하여 개인별 임금 보전액을 임금대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(a)~(p)는 작성 생략<(g)와 (h)만 작성>
- ③ 개인의 근로시간이 소수점으로 산정될 경우 도입 전 3개월 평균 초근시간은(c)는 올림으로 도입 후 3개월 초근시간(d)은 내림을 하여 정수로 기입

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, 「고용보험법」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(반환, 지급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.

4. 일자리 함께하기 신규 고용 근로자 현황 서식

성 명	주민등록번호	고용일 (년 월 일)	월임금총액 (원)	해당 부서	근로계약기간
홍길동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					□기간의 정함이 없음 □기간제

<ス	ᅡ서	日	- 바	۱ <
	i di	Ó	; ⊢	-

① 제도 도입 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

동 서식의 내용에 대해 거짓 및 부정이 발견될 경우,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부정수급(반환, 지급제한, 추가징수 등)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 서식 작성과 관련된 자료는 장려금 수급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
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동 서식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.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19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출합니다.

> 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

■ 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23호서식] <신 설>

사업주 확인서

□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							
하오니,	해당 부분(예, 아니오)에 진하게 체크표시(√)해 주시기 바람	납니다.					
구분	확인사항	예	아니오				
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.						
고용창출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						
장려금	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					
및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					
고용안정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						
장려금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						
	이상입니다.						
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.						
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						
	이상입니다.						
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						
	(일용근로자)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					
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						
	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						
	○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						
	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.						
- 0 -1 -	* 관련된 사업주란?						
고용창출	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·합병·분할된 경우에는 인수·합병·						
장려금	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						
	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						
	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						
	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						
	사업주인 경우						
	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·자금·인사·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						
	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						
	사업주인 경우						
	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·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						
	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						
	10-2 0-5 1 1 1 1 2 0 1						

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**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**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**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 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,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**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「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신청인(대표) (서명 또는 인)

◈ 전국 고용센터(기업지원과(팀)) * `21.1월기준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	서울청	서울고용센터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, 9층 기업지원과 (을지로2가, 을지한국빌딩)	서울특별시 중구・종로구・동대문구	02-2004-7394~5, 7910~1
	서울청	서울서초 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, 5층	서울특별시 서초구	02-580-4972~5, 4922, 4940, 4977~4979
	서울강남지청	서울강남 고용복지+센터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, 금강타워 10층	서울특별시 강남구	02-3468-4703, 4708, 4709, 4711~4716, 4721, 4732, 4737, 4784, 4787, 4845
	서울동부지청	서울동부 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	서울특별시 성동구・광진구・송파구・ 강동구	02-2142-8420, 8426, 8429, 8433~5, 8443, 8456, 8474, 8896, 8404
서 울 청	서울서부지청	서울서부 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-8, 8층 810호 (도화동, 삼창프라자)	서울특별시 용산구・마포구・서대문구 ・은평구	02-2077-3410, 3422, 6001, 6003~5, 6025, 6030, 6034, 6065
	서울남부지청	서울남부 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, 9층 (코레일유통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・양천구・강서구	02-2639-2403~2404, 2411, 2413, 2415, 2333, 2162, 2435
	서울북부지청	서울북부 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, 2층	서울특별시 중랑구・노원구・강북구・ 도봉구・성북구	02-2171-1833, 1800~5
	서울관악지청	서울관악 고용복지+센터	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, 대륭포스트타워 3차 2층	서울특별시 관악구 • 구로구 • 금천구 • 동작구	02-3282-9249, 9353, 9361, 9366, 9379, 9384~6, 9396 9388~9, 9393~4, 9338 9309, 9331, 9219, 9348, 9220, 9233, 9215
	중부청	인천 고용복지+센터	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과	인천광역시 중구·동구·미추홀구· 연수구·남동구 및 옹진군	032-460-4671~81, 032-460-4683~4, 4686~7, 4689 ,4564, 4623, 4723, 4628, 4583, 4560, 4585
중	인천북부지청	인천북부 고용복지+센터	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기업지원팀	인천광역시 부평구・계양구	032-540-5641
부 청	인천북부지청	인천서부 고용복지+센터	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 서구청 제2청사) 10층 기업지원팀	인천광역시 서구. 강화군	032-540-2050 032-540-2051~3
	부천지청	부천 고용복지+센터	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부천시	032-320-8972~5, 8927, 8952, 032-310-8855
	부천지청	김포 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김포시	031-999-0939~ 031-999-0942
중	고양지청	고양 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-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고양시・파주시	031-920-3937 031-920-3962/3964 3957/3988/3997~3998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	의정부지청	의정부 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,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(가능2동 754)	경기도 의정부시 • 포천시 구리시 • 남양주시 • 동두천 시 • 양주시 • 연천군 • 강원도 철원군	031-828-0832~4 0893, 0813, 0838
	경기지청	수원 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수원시 • 용인시 • 화성시	031-231-7864
	성남지청	성남 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성남시·광주시 양평군· 이천시·여주시 하남시	031-739-3170~3 3122, 4991, 4916, 3160, 3163, 3178 (유지-4907,3136,4992,49 36)
	안양지청	안양 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안양시·과천시 광명시·의왕시·군포시	031-463-0761~5, 0767, 0769, 0729
	안산지청	안산 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고용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기도 안산시ㆍ시흥시	고용안정상담: 031-412-6940~6945, 6948,6949 고용유지상담: 031-412-6946~6947
부 청	평택지청	평택 고용복지+센터	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, 장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	경기도 평택시・오산시・안성시	031-646-1205
	강원지청	춘천 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(석사동),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	강원도 춘천시·화천군·홍천군· 양구군·인제군, 경기도 가평군	033-250-1947, 250-1930, 250-1924
	강릉지청	강릉 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(교동), 강릉고용센터 1층	강원도 강릉시ㆍ동해시	033-610-1913
	강릉지청	속초 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, 3층(조양동) 속초고용센터	강원도 속초시・고성・양양군	033-630-1909, 1932
	원주지청	원주 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,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	강원도 원주시·횡성군	033-769-0960, 0942~3, 0946, 0954, 0958, 0946, 0951
	태백지청	태백 고용복지+센터	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	강원도 태백시	033-550-8633
	태백지청	삼척 고용복지+센터	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, 현진빌딩4층	강원도 삼척시	033-570-1906 033-570-1910
	영월출장소	영월 고용복지+센터	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, 영월고용복지+센터(2층)	강원도 영월군 • 정선군 • 평창군	033-371-6254 033-371-6261
부	부산청	부산 고용복지+센터	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(양정동) 부산고용복지*센터 3층 기업지원과	부산광역시 중구・동구・서구・ 영도구・남구・부산진구・ 연제구・사하구	051-860-1923~7, 1931, 1979, 2072, 2100
산 청	부산동부지청	부산동부 고용복지+센터	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⁺센터 별관 7층 기업지원팀	부산광역시 동래구・금정구・ 수영구・해운대구・기장군	051-760-7244~7247,728 8 051-760-7214,7216,728 2,7210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	부산북부지청	부산북부 고용복지+센터	부산 북구 화명대로 9(화명동), 부산북부고용복지*센터 3층 기업지원팀	부산광역시 북구・사상구・ 강서구	051-330-9970~2, 9945, 9952~5, 9922~3
	창원지청	창원 고용복지+센터	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	경상남도 창원시・함안군・의령군 창녕군	055-239-0960
	울산지청	울산 고용복지+센터	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38(옥산빌딩) 9층 기업지원팀	울산광역시	052-228-1922~4, 1926, 1942
	양산지청	김해 고용복지+센터	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*센터 4층	경상남도 김해시, 밀양시	055-330-6434~6
	양산지청	양산 고용복지+센터	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, 5층 기업지원팀	경상남도 양산시	055-379-2430, 2431, 2422, 2472
	진주지청	진주 고용복지+센터	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고용노동부 진주지청(별관) 기업지원팀	경상남도 진주시・사천시・ 산청군, 하동군· 남해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	055-760-6751
	통영지청	통영 고용복지+센터	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'센터 3층 기업지원팀	경상남도 통영시·거제시 ·고성군	055-650-1811~3
	대구청	대구 고용복지+센터	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	대구광역시 중구 • 수성구 • 동구, 경산시 • 영천시 • 군위군 • 청도군	053-667-6006
	대구서부지청	대구서부 고용복지+센터	대구 서구 서대구로 3(내당동) DBS빌딩, 7층	대구광역시 남구, 서구·달서구	053-605-6460~6,, 6477 ,6479
	대구서부지청	대구달성 고용복지+센터	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	대구광역시 달성군, 경상북도 고령군	053-605-9518~9
대 구	대구서부지청	칠곡 고용복지+센터	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	경상북도 칠곡군, 성주군	054-970-1906~8
- 청	포항지청	포항 고용복지+센터	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	경상북도 포항시·영덕군·울릉군 및 울진군	054-280-3051~2, 3055~7, 3070, 3077, 3132
	포항지청	경주 고용복지+센터	경주시 원화로 396 7층	경상북도 경주시	054-778-2500
	구미지청	구미 고용복지+센터	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	경상북도 구미시・김천시・칠곡군 (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)	054-440-3360~4
	영주지청	영주 고용복지+센터	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	경상북도 영주시·봉화군	054-639-1146
	영주지청	문경 고용복지+센터	경상북도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	경상북도 문경시・상주시	054-559-8231
대 구 청	안동지청	안동 고용복지+센터	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	경상북도 안동시・예천군・ 의성군・청송군・영양군	054-851-8062
광	광주청	광주	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(7층)	광주광역시	062-609-8500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		고용복지+센터		동구.서구.남구.북구, 전라남도 나주시・화순군・ 곡성군・구례군・담양군・ 장성군	
	광주청	광주광산 고용복지+센터	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(2층)	광주광역시 광산구, 전라남도 영광군·함평군	062-960-3206~8
	전주지청	전주 고용복지+센터	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, 전주고용복지+센터 3층 기업지원팀	전라북도 전주시 • 무주군 • 장수군 • 진안군 • 완주군 • 임실군	063-270-9210
	전주지청	남원 고용복지+센터	남원시 향단로 39, 남원고용복지+센터	전라북도 남원시·순창군	063-630-3917
	전주지청	정읍 고용복지+센터	정읍시 수성택지3길 28,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+센터	전라북도 정읍시	063-530-7501
주	익산지청	익산 고용복지+센터	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	전라북도 익산시	063-840-6523~4, 6507, 6551, 6553
청	익산지청	김제 고용복지+센터	김제시 화동길 105	전라북도 김제시	063-540-8404, 8406
	군산지청	군산 고용복지+센터	군산시 조촌로 62, 군산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	전라북도 군산시	063-450-0634, 0636~9 0626, 0648, 0655,
	군산지청	부안 고용복지+센터	부안군 번영로 145, 2층 부안고용복지+센터	전라북도 부안군・고창군	063-580-0515
	여수지청	순천 고용복지+센터	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, 4층	전라남도 순천시 • 보성군 • 고흥군	061-720-9164
	여수지청	여수 고용복지+센터	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, 2층	전라남도 여수시	061-650-0155
	여수지청	광양 고 용복 지+센터	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, 8층 커뮤니티센터 8층	전라남도 광양시	061-798-1908
	목포지청	목포 고용복지+센터	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	전라남도 목포시・무안군・ 신안군・영암군・진도군	061-280-0541~2, 0564, 0552
	목포지청	해남 고용복지+센터	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, 2층	전라남도 강진군・해남군・ 완도군・장흥군	061-530-2912, 2905
	대전청	대전 고용복지+센터	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과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 금산군	042-480-6432~39, 6012~19
	대전청	공주 고용복지+센터	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, 스타타워빌딩 4층	충청남도 공주시	041-851-8507
대 전	대전청	논산 고용복지+센터	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-8	충청남도 논산시・계룡시	041-731-8601, 8661
전 청	대전청	세종 고용복지+센터	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	세종특별자치시	044-861-8992~3
	청주지청	청주 고용복지+센터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	충청북도 청주시・진천군・괴산군・ 보은군・증평군・옥천군・ 영동군	043-229-0704~0709, 0720

청	청(지청)	고용센터	주소	담당 지역	대표번호
	천안지청	천안 고용복지+센터	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, 충남타워 3층	충청남도 천안시・당진시・ 아산시・예산군	041-620-7400
	충주지청	충주 고용복지+센터	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(봉방동)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	충청북도 충주시・음성군	043-850-4030, 4032, 4035, 4076
	충주지청	제천 고용복지+센터	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(화산동, 제천고용센터)	충청북도 제천시・단양군	043-640-9322
	보령지청	보령 고용복지+센터	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, 보령고용복지+센터 3층 기업지원팀	충청남도 보령시・서천군・ 부여군・홍성군・청양군	041-930-6255, 6259 6243
	서산출장소	서산 고용복지+센터	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, 서산고용복지+센터 5층	충청남도 서산시・태안군	041-661-5614
제 주	제주고용센터	제주 고용복지+센터	제주시 중앙로 165, 고용복지+센터 2층	제주시・서귀포시	064-710-4462, 4470

❖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(국번없이)1350

- 안내멘트에 따라 2번(고용,노동)→3번(사업주지원금)→상담 연결

